

환경친화 플라스틱 실용화 '활발'.. 부분의장제 도입

플라스틱은 소각되거나 매립되더라도 다이옥신 배출, 환경호르몬 누출 및 불완전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용후 자연의 순환사이클로 흡수될 수 있는 분해성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도 비분해성 플라스틱을 가급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압력을 높이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실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나 빛에 의해 썩거나 분해되는 고분자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용어정의, 분해도평가방법 등은 통일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등에서는 폴리에틸렌(PE)에 전분을 혼합시킨 생분괴성 플라스틱 및 광분해성 플라스틱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분해성 플라스틱의 실용화가 미미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들때 분해성 소재를 일정 비율이상 사용토록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는 등의 요인 때문에 이를 겨냥한 분해성 플라스틱의 특허출원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1990년 이전에는 12건에 불과했지만 1992년부터 1999년 9월까지 출원된 특허 건수는 3백15건에 달했다. 전체적으로는 모두 3백33건 출원됐다. 이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2백28건의 출원인이 내국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국내기업의 연구개발이 활발하다는 얘기다.

7월부터 물품 일부분의 디자인도 부분의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부분의장제가 도입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의장법은 컵 손잡이·전화기 버튼·주전자 토출구·손가락 손잡이 등 물품의 일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의장으로 보호한다.

중전 의장법에선 컵 전화기 주전자등 물품의 전체형태에 관한 디자인만 의장으로 등록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등록의장의 부분의장을 도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특허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를 악용해 먼저 등록된 의장 가운데 일부분을 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부분의장제가 도입돼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 뿐 아니라 일부분만을 도용할 경우에도 의장 침해가 된다.

특허청은 또 다수 물품 집합의 통합적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시스템 의장 출원에 있어 1개 시스템의장에 포함되는 물품 수 제한을 현행 6개에서 31개로 늘려 통합적 디자인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중전에는 "한 벌의 깃연용구 세트" 등 6개기준의 한 벌 물품에 한해 이에 관한 세트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키친 오디오 컴퓨터 시스템등과 관련된 의장도 광범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알려진 노인성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오는 기억력 및 정신기능의 감퇴와 구별되는 특별한 질병의 개념으로, 뇌세포들이 하나 둘씩 원인 모르게 죽어가면서 여러 가지 지적능력의 감퇴가 나타나는 질병이다.

아직까지도 왜 뇌세포가 죽어가는지 완벽하게 밝혀지는 못했지만 유전자 이상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단백질과 같은 이상독성단백질이 만들어

지고 이 잘못된 단백질이 사고력을 담당하는 뇌 세포를 손상시킴으로써 치매가 발생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노인성 치매를 정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출원된 치매관련기술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1997년의 경우 1백80건으로 전년 평균대비 3배 증가했으며 이후 매년 2백50건 이상씩 출원되고 있다.

출원인별로는 화이자와 퀵스트가 각각 60여건으로 최다였고, 스미스클라인비참, 일라이릴리, 글락소 등도 30~50여건으로 많았다.

등록건수에선 미국, 일본, 영국이 전체 등록건수의 80%를 차지했 출원인별로는 퀵스트, 화이자, 메렐다우 순이었다.

치매관련기술 분야에 있어 외국인 독점현상이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효능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품목이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치매치료제의 잠재적 시장은 무한하다”며 “국내 연구진들도 노인성 치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병인규명과 치료제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경제

북한 “창작물 개인 소유” 첫 명시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4차회의에서 채택한 저작권법 전문이 공개됐다.

관계당국이 입수한 북한 저작권법은 가공무역법 등과 함께 북한의 대외개방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주목받아왔다.

6장 48조로 이뤄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13조)는 대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 (16조),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21조)는 등을 명시해 저작자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작권법이나 민법상에 저작권 관련조항이 없어 저작자 개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법제정을 계기로 개인권리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이번 법제정을 개인소유의 확대 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번 법제정은 북한이 1998년 9월 채택한 개정 헌법 24조의 개인소유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했는데, 저작권법은 바로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에 따른 권리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홍성국(洪性國) 경제과학담당관은 “북한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의 개인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 남한을 비롯한 대외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출판물, 영화, 음악 등 북한 예술작품이 남한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주장해 실리를 얻겠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란 얘기다.

이는 저작권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 통제 (41조)를 강조한 점이나 저작권 이용요금을 국가의 가격제정기관이 맡도록 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91년 북한 사회과학원이 펴낸 『리조실록』(총4백여권)을 남한 출판사가 복제출판하자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라는 항의문을 보내온 것을 시작으로 남측 출판사나 음반업체에 저작권을 주장해 왔다.

북한이 현재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뿐으로 97년 말까지 북한의 WIPO 신청 특허건수는 총 2만5천4백여건, 상표는 2천4백여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중앙일보

하기보다 여론몰이와 버티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시장진입을 시도하는 7개 카드사들은 “시민편의”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국민카드를 압박하는데 급급했다. 협상이 지연되자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며 공공연히 힘의 우위를 과시했다. 또 “대가는 지불하겠지만 국민카드의 특허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카드도 시간을 끌면 나쁠게 없다는 생각으로 버티기에 치중하는 인상이다. 물론 “정당하게 취득한 특허권을 내놓는 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서울시 윤준병 교통과장)이고 주력상품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독점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 역시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카드업계는 올해 1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호황은 정부정책과 함께 카드를 적극 사용해준 국민들의 성원이 버팀목이 됐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전향적인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출처 한국경제

교통카드 특허권 ‘이전투구’

“특허권을 보장해 달라”, “시민편의가 우선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이 급성장중인 후불제 교통신용카드 시장진입을 둘러싸고 이전투구식 싸움을 벌이고 있다.

후불제 교통카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한 뒤 카드결제일에 요금을 갚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연은 이렇다.

국민카드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과 2년동안 후불제 교통카드에 대한 독점영업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 계약은 지난 2월 종료됐다.

하지만 국민카드는 계약만기를 앞둔 지난 1월 후불제 교통카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때부터 “독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건없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LG,삼성 등 7개 카드회사와 “특허에 따른 독점권은 20년”이라는 국민카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결국 서울시가 나서 “국민카드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신규진입사들이 카드 한장당 5백원의 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유도해 냈다. 이에따라 양측의 다툼은 “늦어도 이달중에는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LG캐피탈 관계자)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극한대립을 겪으면서 입은 상처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이 협상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

온라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인기

온라인 창업보육 지원사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경영지식포탈 벤처기업인 휴넷(대표 조영탁 www.hunet.co.kr)은 지난 5월 온라인창업보육센터(CBI Korea · www.cbikorea.com)를 개설한 이후, 7월말 현재 200여개의 창업형 벤처업체들이 가입해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추가로 150개 업체가 가입단계에 있는 등 신생 벤처업체들의 참가율이 높다고 밝혔다.

‘CBI Korea’ 사업은 전국의 창업보육센터와

입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경영 컨설팅은 물론 창업, 총무, 노무, 마케팅, 자금, IR, 교육, 기술정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휴넷과 다산벤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 다산벤처, 산은캐피탈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화인회계(회계), 유미특허(특허법률), 이카운트(세무), 디자인리스(디자인) 등 15개의 각 부문의 전문업체들이 'CBI 파트너스'로 참여해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산벤처에서는 창업벤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CBI Korea' 사업조직을 별도 법인화 할 계획도 마련중이다.

온라인창업보육센터에 회원사로 가입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초기 년회비 3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조영탁 휴넷 사장은 "전국에 380여개의 창업보육센터와 170개의 벤처 집적시설에 5000여개의 입주기업이 벤처의 꿈을 키우고 있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물 등 하드웨어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며 "CBI Korea에서는 경영, 마케팅, 자금, 교육, 기술지원 등 창업벤처업체들이 사업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비즈니스모델 하반기 등록 벌써 '특허 분쟁' 조짐

금융 유통 제조업전자상거래등 인터넷 관련기업들에 BM(비즈니스 모델)특허 비상이 걸렸다. 작년에 8천3백2건이나 등록된 인터넷 서적판

매나 인터넷뱅킹시스템같은 BM특허들이 그동안 심사기간을 거쳐 올 가을부터 대거 등록될 예정이어서 관련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BM특허는 금융 유통업체에서 제조업까지 급속하게 확산되고있는데 반해 선진국에서도 아직 확실한 체계가 잡혀있지않아 분쟁소지가 허다하다.

네이트특허법률사무소의 정원기 변리사는 "사이버상권쟁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들이 많기때문에 특허당국의 기준이 객관적인 판별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허대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전문 벤처기업인 웹케시의 경우 기존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상계좌거래를 실제 모계좌거래로 연결하는 시스템에 관한 BM을 출원해 놓고있다. 이 시스템은 이미 국내 모든 은행들이 채용하고있어 웹케시의 특허가 인정될 경우 전체 금융권이 특허침해문제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한 한빛 주택은행등은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해놓고 있다.

또 삼성전자가 등록을 마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진보네트웍스등 다른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이미 관행화됐다면서 특허법원에 제소하고 있다.

또 가상 우체국을 만들어 이메일등을 직접 편지로 보내게 하는 특허를 놓고서도 경쟁업체인 사이버링크와 월드포스팅간에 분쟁이 일고있는 등 최근들어 분쟁이 급증하고있다.

김학상 삼성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BM특허등장으로 인터넷비즈니스는 누가 사업을 먼저 시작하느냐보다 누가 특허를 먼저 획득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유동현 특허청 담당 과장은 "앞으로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특허남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경제

특허뉴스

벤처 특허취득 급증 .. 올들어 113건 달해

올들어 코스닥 벤처기업들의 특허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및 반도체 분야의 특허가 전체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주성엔지니어링은 올들어서만 14건의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증권시장 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코스닥 기업들이 취득한 특허건수는 지난해 동기(47건)에 비해 1백40% 증가한 1백13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중 전체 코스닥 등록기업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매년 특허가 73%(83건)에 달해 벤처기업들의 신기술개발이 더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별로는 반도체 장비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소자제조방법 등 14건의 특허를 획득했으며 이동통신 장비업체인 도원텔레콤도 휴대형 디지털 화상모니터링 시스템 등 12건의 특허를 따냈다.

다음으로 아큐텍반도체기술이 5건, 경동제약 동진썬미캡 파인디지털 등이 각각 4건씩의 특허를 확보했다.

특허 출원국은 국내 특허가 88%(99건)로 대종으로 이뤘으며 미국이 9건, 호주가 2건, 영국 프랑스 대만이 각각 1건씩으로 조사됐다.

특허 내용은 방송·통신 분야가 29건(26%)로 가장 많고 반도체도 27건(24%)이나 됐다.

또 화학 12건, 의약 11건, 영상·음향 7건, 컴퓨터 시스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IT(정보기술)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지난 1~2년간 정보통신 기업들이 대거 특허 출원

에 나섰던게 올들어 결실을 맺고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name 도메인, 오는 11월부터 사용

신규 최상위 도메인 가운데 하나인 .name을 오는 11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들에 따르면 국제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name도메인 관리 주관업체인 글로벌 네임 레지스트리(Global Name Registry, LTD)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name도메인 서비스 일정을 밝혔다.

두 기관은 오는 9월부터 도메인 등록을 받아 10월까지 .biz, .info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자세한 일정은 차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name 도메인은 .pe.kr처럼 개인 사용자를 주 이용 대상으로 삼는 도메인이다.

출처 세계일보

특허권 우선심사 청구시 등록기간 대폭 단축

앞으로 국가의 산업정책상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선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과정을 거쳐 특허출원 후 5개월이면 특허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특허 등록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특허청(www.kipo.go.kr)은 최근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우선심사과정을 거친 경우에도

출원후 1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특허결정
혹은 특허거절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
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이후 출원한 특허출원
에 대해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청구할 경우 심사
관은 15일 이내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우
선심사를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심사관은 거
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특허결정을 하고
출원인은 등록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허등록을 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를 받은 경우라 해도
최소한 1년 3개월이 경과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통상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감안한 기간을 감

안해도 5개월 정도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국가의 산업
정책적 측면 및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선심
사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특허권자의 권리확
보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
다”고 밝혔다.

우선 심사제도는 통상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순
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심사청
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해 심사하
는것으로 방위산업, 공해방지, 전자거래, 수출촉
진에 관한 출원을 비롯해벤처기업, 부품.소재기
술 개발 전문기업의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허
용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2001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USTR

2001년 4월 30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교역국을 대상으로 지재산 보호 정도에 대한 등급을 매긴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01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위한 검토는 약 80여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우크라이나가 우선협상대상국(PFC :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되었으며, 16개국이 우선관찰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 32개국이 관찰대상국(WL : Watch List)으로 지정되었다.

PFC : 우크라이나

PWL :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유럽연합(EU), 이집트,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한국, 레바논,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대만, 우루과이.

WL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그리스, 과테말라, 이태리,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카오, 뉴질랜드,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한국은 작년에 이어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되었으며, 이에 대한 USTR의 스페셜 301조 검토 한국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1년 2월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기관, 대학,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대상의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3월-4월과 9월-10월로 예정된 특별 단속 기간을 위한 강화된 저작권 집행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한국정부는 또한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 불법복제행위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를 환영하기는 하지만, 불행히도 그러한 조치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첫 번째 특별 단속 기간은 (4월 30일 현재) 계속 진행중이고, 그러한 단속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강화된 단속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우리는 또한 한국정부가 효과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미국 무역 및 교육 도서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1년 1월, 한국 정부는 국내 특허 및 상표법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지재산 법률, 특히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많은 약점은 남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여전히 TRIPs 협정에 요구된 1950년 이후에 창작된 작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2000년 12월에, 한국 국회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법은 TRIPs 협정에서 요구되어진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ies)¹⁾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올해 저작권 체계에 대한 필요한 개선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

1)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는 컴퓨터의 특성상 속도, 편리성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의 기능상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것으로 램(RAM)에의 일시적 저장, 캐쉬(Cache)에의 일시적 저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고 있다. 또한 한국법이 TRIPs 협정에서 요구되어진대로 비밀 실험 데이터의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미국은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상세한 대화를 계속해 갈 것이며, 지재권 법률과 그 집행 문제에 관해서 한국의 진전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진전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서의 실질적인 감소와 다른 가시적인 개선을 낳게 되어 올해 하반기에 한국의 스페셜 301조 재검토 시에 한국이 유리한 등급을 받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작년 2000년에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스페셜 301조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올려놓고, 이에 대한 비정기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19일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 301조 비정기점검(out-of cycle review)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국을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여전히 남겨 놓았다.²⁾ 이에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불법복제 대책마련 지시³⁾에 이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발표하였다.⁴⁾ 이는 3월 19일부터 한

국을 방문한 USTR 대표단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고⁵⁾,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보다 한달 앞선 국가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NTE : National Trade Estimate)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매년 4월 30일에 발표되는 2001년 스페셜 301조 정기 보고서에서는 그 등급이 낮아질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예상을 깨고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스페셜 301조의 우선관찰대상국으로 2년 연속 올려놓음으로써 한국의 지재권 보호의 효과에 있어서 의심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또한 부시 공화당 정권의 대한 무역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재권 분야에 있어도 예외가 아님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본 건은 매년 4월 30일에 발표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1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한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 USTR의 스페셜 301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 스페셜 301조 그리고 한국”, 『발명특허』, 2001. 4. 참조.

2) “다가오는 올해의 스페셜 301조 연례검토서의 작성 이전에, 우리는 한국이 지식재산권의 집행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의 더 많은 개선, 기밀 임상실험 데이터의 더 강력한 보호, 한국 보건 당국의 공무원과 지재권 담당 공무원과의 더 긴밀한 공조가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바르세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대사는 말하였다.
미 무역대표부, “2000년 스페셜 301조 비정기점검 결과”, 2001년 1월 19일 (<http://www.ustr.gov/releases/2001/01/01-11.html>)

3) 2001년 2월 19일 “김대통령, 불법복제 대책마련 지시”, 매일경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지적재산권은 보호해야 한다”면서 “시장 경제가 작동하고 우수한 창의와 아이디어가 평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죽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朴俊榮)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4) “정통부 3월부터 불법복제 대대적 단속” 매일경제, 2001년 2월 22일

5) 2001년 3월 2일, “USTR, 지적재산권 상시단속 필요” 조선일보
방한중인 미국 통상대표단이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상시단속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 통상대표부(USTR) 아.태 담당 부대표보 일행은 이날 외교부를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진행중인 지적재산권 단속을 상시화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측은 우리의 지적재산권 특별단속에 대해 높이 평가한 뒤 상시적인 단속 방안 마련을 검토해 달라는 의사를 내비쳤다”면서 “그러나 이번 방문은 팩트파인딩(fact-finding, 사실확인) 차원의 만큼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저개발국가의 지적권 제도를 강화 하기 위한 WIPO 지원 프로그램

WIPO

2001년 5월 15일 브뤼셀에서는 저개발국가(Least Developed Countries)들에 대한 국제연합 회의(LDC III)가 있었다. 여기에서 세계지식 재산권기구(WIPO)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저개발국가들은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로베르토 카스텔로(Roberto Castelo) WIPO 사무차장은 저개발국가들이 좀더 효과적인 지적권 보호 제도를 통하여 창의력의 경제적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였다.

개회사에서, 루벤스 리쿠페로(Rubens Ricuperro) UNCTAD(무역 및 개발에 관한 UN 회의) 사무총장은 일반적인 정책 원칙을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마다가스카의 정보문화통신부의 베티시미피라 프레도(Betsimifira Fredo) 장관과 브라질의 과학기술부의 로날도 사르덴베르그(Ronaldo Sardenberg) 장관도 기조 연설을 하였다.

저개발국가에서의 지적권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WIPO의 지원책(deliverables)을 소개하면서, 카스텔로 WIPO 사무차장은 신속하고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관련된 집중적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저개발국가의 시급하고 즉각적인 필요를 피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

조하였다. 카밀 이드리스 WIPO 사무총장의 비전을 언급하면서, 카스텔로 사무차장은 세계화와 시장 통합은 범 세계적인 참여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카스텔로 사무차장은 WIPO의 지원책은 발전의 기반(source of development)으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였다. 지식의 이전 없이는 저개발국가가 혁신 능력을 완전히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WIPO의 지원책은 저개발국가에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국가들의 "지식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안된 구체적인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지원책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WIPO 세계 아카데미의 교육, 연수, 조언, 및 연구 서비스를 통한 지식 이전과 인적 자원의 발전;
- 사용가능한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개선된 접근과 WIPO 지구 정보 네트워크(WIPO-NET) 설치를 통한 및 데이터 교환;
-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적 관리 사회의 창조;
- 전통지식, 유전적 자원 및 민속 표현의 부(富) 창출 효과의 최적화;
- 중소기업의 혁신적 창조적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좀 더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적권 제도를 더 잘 사용함으로써 더 큰 시장의 더 나은 접근을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

49개의 저개발국가⁶⁾들 중 41개국⁷⁾만이 WIPO

6)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케이프 베르드, 중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콩고공화국, 디부티, 적도기니, 에리크리아, 이디오피아,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하이티, 키리바티, 라오인민공화국, 레소토, 리베리아, 마다가스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사오 톰 프린시프, 세네갈, 시에라레온, 솔로몬 군도, 소말리아, 수단, 토고, 투발루, 우간다, 탄자니아연합공화국,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7) 아프가니스탄, 코모로스, 디부티, 키리바티, 몰디브, 솔로몬 군도, 투발루, 바누아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회원국이기는 하지만, 모든 저개발국가는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 하의 WIPO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카스텔로 WIPO 사무차장은 “모든 저개발국가는 WIPO 지원과 협력으로부터 똑같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도전은 이러한 국가의 필요에 관련된 지재산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WIPO 실천 프로그램은 2001년 2월 1일과 2일 저개발국가(LDCs)에 관한 고위급 회담에서 각국 관료와 정부 고위관리들이 채택한 지재산에 관한 리스본 선언에 기초로 형성되었다.

저개발국가에게 이러한 새로운 혁신세계를 가져다줄 수 있기 위한 창조적 방법과 수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특허와 전통적 지식에 관한 전략과 모델 법률은 그 발전에 촉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유럽위원회의 대표는 WIPO의 지원책을 강력히 찬성하였고, 리스본 선언을 환영하였다. 리스본 선언은 저개발국가와의 장애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용하고 건설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하였다.

많은 대표들은 효과적인 지재산 제도가 외국 직접 투자를 끌어올 수 있고 혁신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을 증진하며, 따라서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환경을 창출하고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 요소임을 인지하였다. 수많은 국가들이 WIPO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인 노력에 대한 칭찬하였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제도를 강화하고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재산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본 건은 2001년 5월 15일 브뤼셀에서 있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국제연합회의에서 WIPO가 저개발국가의 지재산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WIPO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남북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발전 차이에 비추어 비롯되는 것으로 지재산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갈등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의 TRIPs 협정 협상에도 드러났었다. 현재로서 한국은 저개발 국가의 지재산 제도에 대한 지원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UN과 WIPO의 회원국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올린 보고서이다.

WIPO, 기술 콘소시엄에 최적 실시 지침 보고서 제공

WIPO

세계지식재산권(WIPO)의 조정및중재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와 세계의 선도적 기술 기업으로 구성된 비영리 국제 콘소시엄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산업 콘소시엄(ASPIC: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Industry Consortium)은 공동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산업을 위한 분쟁 방지 및 해결에 대한 최적 실시 지침서를 마무리하였다. 실천 지침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2001년 5월 18일 제네바에서 크란시스 게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보(Assistant Director General)가 최종 보고서⁸⁾를 트라베 그루엔-케네디

ASPIC 의장에게 제출하였다.

같은 날 제네바에서 또한 ASPIC를 대표하여 그루엔-케네디 의장은 WIPO가 ASP 산업에 뛰어난 서비스와 기여한 것에 대한 ASP 세계 업적상(ASPire World Achievement Award)을 WIPO에 수여하였다. 이 상은 일련의 분쟁 방지 및 해결에 대한 최적 실시 지침서를 개발한 WIPO 조정 및 중재 센터의 노고를 인정하여 수여된 것이다. 게리 사무총장보는 WIPO 조정 및 중재 센터가 최근에 설립한 ASP 분쟁 해결 서비스를 통하여 ASP 공급 연결체에서 계약 당사자들에게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의 준비성을 확인하였다.

ASP는 인터넷 혹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거리 데이터 센터로부터 여러 사용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응용소프트웨어)과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외부 공급자로부터 임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얻는 것은 선행 자본 비용, 시행 문제, 시스템 관리 및 유지, 업그레이드 및 고객중심화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와 같은 시스템 소유 요구에 따른 부담에 대한 비용절감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ASP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소프트웨어, 배치 시간 및 IT 인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한 사업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25개의 세계의 선도 기술 기업에 의해서 1999년 6월 설립 이후로, 30개국에서 7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ASP 산업 콘소시엄에 가입하였다. 콘소시엄의 임무는 연구를 지원하고, 최선의 실천 지침을 증진하고, 새로운 컴퓨팅 전달 모델로서 ASP의 전략적 수량적 혜택을 명시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산업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ASPIC는 다른 활동 중에서 산업계에서 공동 정의를 제공하고, 문제의 토론을 위한 포럼으로서 작용하고, 산업 연구를 지원하고, 지침서를 개발하고, 최적 실시 지침을 증진한다.

ASPIC는 초기부터 회원들의 사업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분쟁 방지 및 해결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분야에 있어서 WIPO의 조정 및 중재 센터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서, ASPIC는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2000년 2월에 WIPO 센터와 접촉하였다. 콘소시엄 이사회는 후속적으로 특별히 ASP 산업에서의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센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모델과 관련 관심사를 제시한 15명의 ASPIC 회원으로 구성된 WIPO내의 분쟁 방지 및 해결 팀(DART : Dispute Avoidance and Resolu-

8) 보고서의 명칭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산업을 위한 분쟁 방지 및 해결 최적 실시 지침서(Dispute Avoidance and Resolution Best Practices for the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Industry)」로 ASP 산업 콘소시엄과 WIPO 조정 및 중재 센터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163쪽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주요 section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tion I : ASP 산업 개요

Section II : ASP 공급 체인 분쟁

Section III : 분쟁 해결 최적 실시례와 지침서

Section IV : ASP 공급 체인 계약에 있어서 분쟁 해결 Clause에 대한 지침서 초안작성

Section V : 분쟁 방지 최적 실시례와 지침서

부록으로는 WIPO의 분쟁 해결, 조정, 중재에 대한 규칙 조항과 이에 드는 비용, ASP 공급 체인 분쟁의 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문은 "http://arbiter.wipo.int/asp/report/index.html"에서 볼 수 있다.

tion Team)이 설립되어 산업의 최적 실천 지침을 정의하는데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였다. ASPIC 회원은 서비스 수준 협정에 관한 ASP 산업 내에서의 연구조사를 시행하였다. ASPIC 회원은 또한 ASP 가치 연결체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분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실행, 질 혹은 기능 프로젝트 관리 업적, 저작권 및 소유권 침해, 서비스 실패, 데이터 혹은 데이터의 성실성 상실을 포함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ASP 모델의 성격을 결정짓는 정보기술 관계에 있어서 여러 분야가 있다.

한곳에서 여러 대상으로(one-to-many) 전달되는 모델의 성격 때문에 ASP의 이러한 각 분야 혹은 다른 분야에서 ASP가 져야 하는 책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특히 국경을 넘는 국제간 관계에서, 각기 다른 법적 제도, 다른 상업적 법적 문화, 언어 및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갈등에서처럼 상업적 법적 위험성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분쟁 방지 전략과 함께 신속하고 비용절감적인 분쟁 해결은 ASP 산업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1994년에 제네바에서 설립된 WIPO 조정및중재센터는 인터넷 및 전자 상거래 관련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빠르게 명성을 얻고 있다.

전통적인 조정 및 중재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WIPO 센터는 도메인 이름 분쟁에 대한 선도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까지 인터넷 불법행위 즉, “사이버무단점거(cybersquatter)”로부터 자신의 인터넷 확인 이름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상표권자들이 제기한 2,500건 이상의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이 센터에 제소되었다.

★ 본 건은 전자상거래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SP 산업에 있어서 잠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 WIPO의 조정및중재센터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참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WIPO가 ASP 산업 콘소시엄에 분쟁해결 방지 및 해결에 대한 최적 실시 지침서를 제공하였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국경없는 분쟁의 발생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인터넷 시대에 ASP 산업도 그 사업 성격상 잠재적 분쟁 대상의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의 움직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올린 보고서이다.